

제20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제2차 본회의 (2015. 4. 15.)

조례안 심사 보고서



산업건설위원회

— 목 차 —

의안번호	건 명	페이지
2015 ~ 19	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	1

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 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5. 3. 31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 일자: 2015. 4. 1.
- 라. 상정및의결일자: 2015. 4. 10.

2. 제안이유

-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 이(2015.1.6.시행) 개정되어 조례의 기준이 되는 사항인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위원의 범위에 진주보훈지청장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추가함(안 제3조제2항)
 - 진주보훈지청장
- 나. 「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」에 맞춰 용어를 순화함
(안 제3조제2항)
 - 자 ⇒ 사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

○ 「통합방위법」 제5조, 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 제8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안의 개정은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, 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이 (2015.1.6시행)개정되어 개정된 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과 같이 통합위협의회의 당연직위원의 범위를 개정함은 타당하며
- 「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」에 맞춰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용어를 순화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6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7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8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9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10. 소수의견요지: 해당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